

정 관



Pulmuone

주식회사 플무원

전 문

1955년. 경기도 부천의 농부 원경선은, 한국전쟁 뒤 떠도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함께 농사 짓고 살던 농장에 ‘풀무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풀무질로 쓸모없는 쇠붙이가 농기구가 되듯이 농사를 지으며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브랜드 ‘풀무원’은 농부 원경선의 사람과 자연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것이다.

1976년. 환갑을 넘은 고령의 농부 원경선은 부천 풀무원 농장의 식구들과 소 6마리를 이끌고 농약과 화학비료로 오염되지 않은 경기도 양주로 이사했다. 한국 땅에 첫 유기농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었다. 3년을 애써서 마침내 성공했다.

이 혁신적이고 이타적인 농부 원경선이 유기농이라는 선한 농업으로 이루고자 했던 가치의 핵심은 ‘이웃사랑 생명존중’이었다. 당연하게도 풀무원의 브랜드 정신은 ‘이웃사랑 생명존중’이다.

1981년 5월 12일. 서울 강남의 골목길에 작은 채소가게가 문을 열었다. ‘풀무원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 원경선의 풀무원 농장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와 곡식을 파는 가게였다. 유기농이 별 알려지지 않은 때여서 ‘무공해’라고 했다. 이 가게는 맛과 모양만으로 식품을 선택해온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내재 가치라는 새롭고 소중한 기준을 제시했다.

작지만 큰, 풀무원의 창업이다.

1984년 5월. ‘풀무원식품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유기농산물 가게이면서 두부, 콩나물을 건강하고 값진 ‘바른먹거리’로 진화시키고, 현대인의 불균형한 식생활을 보완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까지 제조업을 확대해 성공을 거두었다.

언제나 ‘바름’을 추구하는 식품회사 풀무원의 창사이다.

풀무원은 이렇게 세워져 ‘처음’을 잊지 않고 혁신을 거듭하여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식품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앞으로도 브랜드 정신인 ‘이웃사랑 생명존중’의 가르침대로 사람과 자연에 모두 이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추구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또한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풀무원의 미션은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러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끊임없이 혁신한다. 특히 식물성지향 식품과 동물복지 식품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제품화를 이끈다. 나아가 풀무원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역량으로 개별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풀무원은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사업의 출발점인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사업의 터전인 사회와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진지하게 모색하고 실천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다. 그럼으로써 회사와 우리 공동체,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한다.

풀무원은 경영의 이해관계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첫째,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풀무원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조직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나아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유념한다.

셋째, 풀무원의 동반자인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로 상생을 도모한다.

넷째, 사업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선다.

다섯째,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드높이고 주주에게 지속가능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섯째, 우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환경에 이로움을 고려하고 실천한다.

이는 풀무원 백년의 지도이다.[개정 23.03.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풀무원", 영문으로는 "Pulmuone Corporate"라고 표기한다. [개정 21.03.25]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4.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5.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7.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무대행업
8.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9.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10. 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한 식품 제조업
11. 바른 식생활을 위한 농원 경영업
12. 바른 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한 판매 및 유통사업
13. 의약품 및 기타 화학약품 제조 판매업
14. 수·출입업
15. 부동산 매매 임대업
16. 창고업
17. 박물관 운영업
18. 전자 상거래업
19. 통신판매업
20. 제품의 위탁생산, 판매업
21. 용역 제공업
22.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북도 음성군내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ulmuon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개정 21.03.25]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단, 제 5 항에 따른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1.03.25]

②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하고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④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⑤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의로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상법 또는 정관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거나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제 7 조의 4 에 따른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⑦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은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1.03.25]

제 7 조의 3 (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제 7 조의 2 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이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개정 21.03.25]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전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7 조의 4 (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월 이상 10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개정 21.03.25]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제 7 조의 3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⑦상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금조달, 기술제휴, 지배구조개선, 기타 경영상 필요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2 항 각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또는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의 2 (삭제)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9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제 1 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등기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등기이사 이외의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 9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09.03.26]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회사 또는 제 1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4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3.27]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무/비재무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개정 23.03.30]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삭제)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 (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총괄 CEO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 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3.03.30]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자금조달, 기술제휴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기관 및 업무협력 법인의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단, 공모발행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자금조달, 기술제휴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기관 및 업무협력법인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단,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한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6 조 (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총괄 CEO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총괄 CEO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그 외에 1 개의 일간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 제 4 항 및 상법 시행령 제 10 조에 규정된 내용을 통지 또는 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를 해당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3.03.30]

②주주총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3.03.30]

제 21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3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4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 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전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8 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13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4.03.28]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규정에 의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어지는 집중투표청구권을 배제한다.

④사내이사로 선임할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서 정한 지주회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 조의 3(지배·종속 관계) 에서 정한 종속회사의 주요 보직자(각 회사 임원퇴직금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직 및 상근고문규정에서 정하는 상근고문)이어야 한다.

제 29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0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24.03.28]

제 31 조 (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②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총괄 CEO 대표이사라 한다. 다만, 수인의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 중 1 인을 총괄 CEO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총괄 CEO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인의 대표이사 사이의 업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사의 직무) ①총괄 CEO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사내이사(본항의 목적상 총괄 CEO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제외함)는 총괄 CEO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총괄 CEO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 34 조(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는 그 이사가 회일 7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제 36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신주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7 조의 2(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기타 각종 위원회 등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5 조, 제 36 조 및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전체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개별이사의 보수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8 조의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이 회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상법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3.03.30]

제 39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0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1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신설 09.03.26]

제 42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3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총괄 CEO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의 결의로 승인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총괄 CEO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괄 CEO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삭제)[25.03.26]

⑥(삭제)[25.03.26]

⑦총괄 CEO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삭제)

제 46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7 조 (주식의 소각) ①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 말 상법 제 46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일 것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 2 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 (이익배당) ①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4.03.28]

제 48 조의 2 (분기배당) ①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부터 45 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5.3.26]

②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5. 3. 26]

③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사업연도 중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삭제)

제 49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50 조 (세칙내규)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51 조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법령에 따른다.

제 5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제 53 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증권거래법 시행(2001 년 4 월 1 일) 당시 증권거래법 제 189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 47 조 제 1 항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5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 년 7 월 1 일 (분할기일)부터 시행한다.

(*주) 본 정관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상의 내용변경에 따라 해당부분이 변경 될 수 있음

부 칙 (3)

이 정관은 2009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이 정관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주) 제 4 조 (공고방법) 및 제 40 조(감사위원회의 구성)는 2012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이 정관은 2014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이 정관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와 제 6 조의 개정내용은 액면분할에 관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pulmuone.co.kr>) 공고 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 8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4 조의 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이 정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8 조(이익배당)의 개정내용은 제 41 기 사업연도(2024. 1. 1.~2024. 12. 31.)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15)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정 관

제 정 1984. 05. 31.	개 정 1988. 02. 01.
개 정 1989. 12. 12.	개 정 1991. 06. 28.
개 정 1991. 08. 31.	개 정 1991. 12. 09.
개 정 1992. 12. 01.	개 정 1992. 12. 22.
개 정 1993. 03. 04.	개 정 1993. 06. 19.
개 정 1993. 06. 29.	개 정 1994. 07. 05.
개 정 1995. 05. 12.	개 정 1995. 09. 01.
개 정 1996. 03. 15.	개 정 1997. 03. 14.
개 정 1998. 03. 13.	개 정 1999. 03. 19.
개 정 1999. 05. 25.	개 정 2000. 03. 17.
개 정 2002. 03. 15.	개 정 2003. 02. 28.
개 정 2003. 03. 28.	개 정 2005. 03. 25.
개 정 2006. 03. 31.	개 정 2008. 07. 01.
개 정 2009. 03. 26.	개 정 2012. 03. 30.
개 정 2014. 03. 28.	개 정 2016. 03. 25.
개 정 2017. 03. 30.	개 정 2018. 03. 30.
개 정 2019. 03. 29.	개 정 2020. 03. 27.
개 정 2021. 03. 25.	개 정 2022. 03. 30.
개 정 2023. 03. 30.	개 정 2024. 03. 28.
개 정 2025. 03. 26.	